

영등포구의회
제19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
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6. 10. 25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民 基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64호로 2016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기타 조례 내용 중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정리 (안 제2조의2)
- 나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명 위촉위원 구체화 (안 제6조)
- 다.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 개선·보완 및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이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법령명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(안 제2조의2제2호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“중소·벤처기업지원센터”를 “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”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,(안 제4조제1항제3호)
- 기금의 용도 중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으로 명확화 하였으며,(안 제4조제1항제4호)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음.(안 제5조제3항)
- 또한,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.(안 제6조제3항)
- 그 밖에 법령명 붙여 쓰기, 불필요한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참 고 자 료

1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5.5.28.] [법률 제13086호, 2015.1.28., 전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2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

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"지식산업"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.

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"정보통신산업"이란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·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·기술·역무,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.

3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와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08.05.29〉

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(이하"창업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한다.〈개정 2008.05.29〉